

2018년도

무형문화재위원회 제11차 회의 안건

- ▣ 회의일시 : 2018. 10. 19.(금) 14:00
-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 출석위원 : 서연호(위원장), 채금석, 안귀숙, 신타근, 조일상,
최성은, 홍나영, 정복상, 박상미, 김태식,
이정덕(이상 11명)
-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무 형 문 화 재 위 원 회

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됩니다.

제1호.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제2호.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제3호.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제4호.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아울러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은 위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 해당 시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무형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회의내용은 기록·녹취되며 회의 결과는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무형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에 따라 의결 방식은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야 하며, 과반수의 찬성에 따라 의결됨을 알려드립니다.

목 차

【심의사항 2건】

1. 국가무형문화재 제119호 ‘금박장’ 명예보유자 인정 1
2. 국가무형문화재 제119호 ‘금박장’ 보유자 인정 3

【검토사항 1건】

1. ‘장 담그기’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가치 검토 19

심 의 사 항

1. 국가무형문화재 제119호 ‘금박장’ 명예보유자 인정

가. 제안사항

국가무형문화재 제119호 ‘금박장’ 명예보유자 인정 건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18년도 무형문화재분과 제8차 회의(2018.8.17.)에서 국가무형문화재 제119호 ‘금박장’ 보유자 김덕환을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하기로 하고, 명예보유자 인정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공고(2018. 8. 29)한 후에 명예보유자 인정 여부에 대한 심의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지정현황

- 지정명칭 : 국가무형문화재 제119호 ‘금박장’
- 지정일 : ‘06. 11. 16.
- 전승자 현황
 - 보유자(1명) : 김덕환(‘35년생, 남 / ‘06. 11. 16. 인정)

2) 예고사항(관보 제19328호 / 2018.8.29. / 문화재청 공고 제2018-280호)

- 인정예고 내용

지정번호 및 명칭	구분	성명	성별	생년월일	가·예능	주소
제119호 금박장	명예보유자 인정	김덕환 (金德煥)	남	1935.3.14	금박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곡로

○ 예고 사유

- 국가무형문화재 제119호 금박장 보유자 김덕환은 그동안 해당 종목의 전승을 위하여 헌신해 왔으나,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이 어려워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함.

5) 예고 결과 : 이의제기 없음

라. 검토의견

- 신청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받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해당자의 연령 및 건강 등을 감안하여 명예보유자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마. 심의할 사항 : 김덕환 보유자의 명예보유자 인정 여부.

바. 의결사항

- 김덕환을 국가무형문화재 제119호 금박장 명예보유자로 인정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가결 11명

2. 국가무형문화재 제119호 ‘금박장’ 보유자 인정

가. 제안사항

국가무형문화재 제119호 ‘금박장’ 보유자 인정 건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18년도 무형문화재분과 제8차 회의(2018.8.17.)에서 ‘김기호’를 국가무형문화재 제119호 ‘금박장’ 보유자로 인정 예고하기로 하고, 보유자 인정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공고(2018. 8. 29 ~)한 후에 보유자 인정 여부에 대한 심의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지정 현황

- 지정명칭 : 국가무형문화재 제119호 ‘금박장’
- 지정일 : ‘06. 11. 16.
- 전승자 현황
 - 보유자(1명) : 김덕환(‘35년생, 남 / ‘06. 11. 16. 인정)
 - ※ 보유자 김덕환 : 2017. 5. 8. 명예보유자 신청

2) 추진 경과

- 2018년 전승자 총원 계획에 포함(‘18.1.23)
- 보유자 인정조사 조사대상자 신청 접수(‘18.3.16~4.16)
- 보유자 인정조사 1단계 실시(‘18.5.11)
- 보유자 인정조사 1단계 결과 검토(‘18.5.25)
- 보유자 인정조사 2단계 실시(‘18.6.22)
- 보유자 인정조사 2단계 결과 검토(‘18.7.20)
- 보유자 인정조사 3단계 실시(‘18.8.3~5)
- 보유자 인정 예고(2018. 8. 29)

3) 예고사항(관보 제19328호 / 2018.8.29. / 문화재청 공고 제2018-281호)

○ 인정예고 내용

지정번호 및 명칭	구분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제119호 금박장	보유자 인정	김기호 (金基昊)	남	1968.9.16	금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무서8길

○ 예고 사유

- 김기호는 국가무형문화재 금박장의 전승능력, 전승환경, 전수활동 기여도 등이 탁월하여 국가무형문화재 제119호 금박장 보유자로 인정 예고함.

4) 예고 결과 : 이의제기 있음(3건)

라. 검토의견

- 김기호를 국가무형문화재 제119호 금박장 보유자로 인정 예고하였으며(18.8.29), 인정 예고기간의 이의제기가 3건 있었음.
- 김기호의 국가무형문화재 제119호 금박장 보유자 인정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람

마. 심의할 사항 : 국가무형문화재 제119호 ‘금박장’ 보유자 인정 여부

바. 의결사항

- 김기호를 국가무형문화재 제119호 금박장 보유자로 인정함. 세부 기예능을 ‘금박올리기’로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가결 11명

검 토 사 항

1. ‘장 담그기’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가치 검토

가. 제안사항

‘장 담그기’의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가치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2017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인정) 조사 계획에 따라 ‘장 담그기’에 대한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가치 조사 연구용역(‘18. 5~9월)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신규종목 지정 여부에 대하여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추진경과

- 2018년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인정) 조사 계획 수립(‘18.1.23.)
- ‘장 담그기’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가치 조사 연구용역 실시(‘18.5.18.~ 9.24.)

2) 학술조사 개요

- 조사기간 : ‘18.5~9월
- 조사내용
 -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지정 조사의 조사지표에 따른 지정가치 조사
 - 조사지표별 심화조사

3) 조사내용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필요성>

- 콩을 재료로 하여 소금에 버무려 만든 양념의 일종인 장은 오랜 세월 동안 한국인의 밥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고, 우리 음식의 근간임. 장 담그기는 겨울 김장과 더불어 가족공동체의 연례행사로써 행위 그 자체가 우리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 장 담그기는 각 가정에서 여성들에 의해 구전(口傳)을 통해 전승되고 있으며, 한국의 주거문화, 세시풍속, 기복신앙, 전통과학적 요소를 복합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문화적 자산임.

<종목 지정 방식에 대한 검토>

- 장 담그기는 특정 지역이나 가문, 계층에서만 향유하는 문화가 아닌 삼국시대 이후 오늘날까지 한국의 각 가정에서 보편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문화적 소산이므로 특정 인물이나 단체를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하기 어려워 종목만 지정하는 것을 제안함.

<종목 명칭에 대한 검토>

- '18년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인정) 조사 계획 수립('18.1.23.) 시에는 '장(장류) 만들기'로 종목 명칭이 검토되었으나, 장(醬)은 발효와 숙성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장(醬)이라는 단어 자체가 장류를 포괄할 수 있으므로 '장(장류) 만들기'보다 '장 담그기'를 제안함.

라. 검토의견

- 역사성, 학술성, 예술성·기술성, 대표성, 사회문화적 가치,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장 담그기'를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으로 지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 연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가치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람.

마. 검토할 내용 : '장 담그기'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가치 검토

바. 의결사항

- 가결함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가치 있음)
 - 보유자 및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종목으로 지정 예고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가결 11명